

특별상각과 준비금을 통한 법인세 감면기업의 재무적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inancial Characteristics of the Tax Exempted
Firms Through the Special Depreciation and Tax Reserves

박 창 래
Park, Chang -Rae

목 차

- I.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 II. 이론적 배경
 - 2.1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 2.2 법인세 감면 유형
 - 2.3 간접적 법인세 감면 방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 III. 가설의 설정 및 분석방법
 - 3.1 가설의 설정
 - 3.2 변수의 정의
 - 3.3 실증분석의 절차
 - IV. 실증분석 결과
 - 4.1 각 변수사이의 관계
 - 4.2 간접적 법인세감면과 단기 지급능력
 - 4.3 간접적 법인세감면과 수익율
 - 4.4 각 방법의존에 따른 수익율 및 지급능력
 - V. 요약 및 연구의 결론
- <참고문헌>
-

I.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회계는 정보사용자에게 판단과 의사결정을 가능하도록 경제적 정보를 인식, 측정, 보고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15]. 따라서 회계는 정보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양적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진다[9]. 회계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다양하며 그 이용자들 또한 다양하다. 회계정보 이용자들은 정보를 제공하는 경제실체의 이해관계자들로서 경제실체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통하여 경제실체와 나아가서 경제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회계는 의사결정자와 그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성격에 따라 여러 영역으로 구분된다. 회계는 재무보고를 그 중요영역으로 하고 있으나, 조세의 결정과 계획, 감사, 자료처리와 정보시스템, 원가관리회계, 국민경제회계 등 다양한 영역으로 구분된다. 이중 조세의 결정과 계획영역은 법률과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결정과 보고를 다루는 부분이다[11]. 조세는 국가의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특정한 개별적 보상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적 경제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경제적 부담이 되므로[7] 세무회계는 국민경제 전체와도 관련을 맺게 된다. 특히, 국세는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으로 국가의 경제운용과 직접 관련된다. 국세는 국가의 사업과 관련되어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됨과 동시에 국가경제의 운용에 관련된 경제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법인세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하여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직접세로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에 속한다. 법인세는 법인의 활동결과를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법인이 자원을 국가에 납부하게 되어 법인의 부를 국가로 이전시키게 된다. 즉, 법인세는 법인의 자원이 국가로 이전되어 법인에게는 부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부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법인들은 조세를 되도록이면 회피하여 부의 향상을 추구하게 된다[17]. 법인들의 조세 회피동기는 국가의 재정정책에 활용될 수 있다. 즉, 국민경제에서 특정산업을 육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는 특정 조건을 갖는 법인에 대하여 세금상의 혜택을 줄 수 있다. 법인은 이러한 세제상의 혜택을 가능한 최대로 이용하여 법인의 부를 극대화 하려 할 것이다.

법인이 부를 극대화 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조세제도를 활용할 경우 법인은 되도록이면 조세를 회피하거나 조세를 연기하여 현금지출의 현재가치를 최소화 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세의 절약은 아무제약이 없이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다. 비록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을 지라도 그것을 제한없이 사용할 수는 없다. 이연법인세”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회계방법의 선택에 따른 조세절감 정책은 손비를 증가시키게 되고 그결과 당기순이익의 감소를 가져온다. 당기순이익의 감소는 경영자들의 성과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경영자에 대한 보상에 어려움을 가져오거나 부채조달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영자들은 이익의 감소가 미치는 부정적 효과와 세금감소에 의한 긍정적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세금과 관련된 회계처리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이것은 또한 이익에 영향이 없는 세금절감방법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제표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에 대한 회계처리 변경을 통하여 법인세를 절감하는 기업들의 재무적특성을 살펴본다. 즉,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감면방법을 이용하는 기업이 지급능력과 이익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다. 둘째,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변경을 통하여 세금을 절감하는 기업과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회계변경을 통하여 세금을 절감하는 기업 사이에 지급능력과 이익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II. 이론적 배경

2.1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재무회계와 세무회계는 재무회계상의 손익의 인식과 세무회계상의 과세소득 결정 방법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기업의 이익에 대한 측정은 경제적 이익개념과 회계적 이익개념이 존재한다. 경제적 이익개념은 히스(Hicks)의 이익개념으로 “개인에게 있어서 기초와 기말의

- 1)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과 회계상의 소득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는데 이러한 차이는 영구적인 차이와 일시적인 차이로 구분된다. 일시적인 차이는 수익(익금)이나 비용(손금)의 귀속기간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귀속기간의 차이는 회계선택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고 이차이는 소득에 따른 조세의 차이를 가져와 이연법인세계정을 낳는다[22].
- 2) 후입선출법에 의한 재고자산 처리가 물가상승기에 기업의 조세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데도 후입선출법이 잘 선택되지 않는 이유를 연구한 휴그와 슈바르츠는 경영자들이 후입선출법에 의한 세금상의 이익과 자본시장에서의 기업에 대한 평가하락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21].

복리(well off)가 같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기중에 최대한 소비할 수 있는 현금의 양”으로 정의 된다[20]. 이러한 개념은 자본유지에 기초를 둔 이익개념으로 진정한 이익을 측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나타난 것이다. 반면, 회계적 이익개념은 수익과 비용의 대응에 초점을 둔 것으로[23]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경제적 이익과 회계적 이익의 차이는 기간개념에서 나타나는 차이로 수익인식과 관련된다[12, 25].

수익은 경제실체의 주요 운영을 구성하는 재화의 제공, 생산, 서어비스의 제공 또는 기타활동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에 획득된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를 의미한다[18, par 63]. 수익은 현금유입이 존재하거나 기대되는 것으로 실현에 의하여 인식된다. 수익의 실현은 비현금 자원이나 권리가 화폐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자산의 판매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18, par 83]. 비용은 수익의 실현을 위하여 소멸된 자원을 의미한다[18, par 65]. 따라서 회계에서의 이익은 영업활동의 결과 발생하는 수익과 수익의 실현을 위하여 소멸된 자원인 비용을 대비시켜 계산된다.

세무회계는 법령에 의거하여 과세소득과 세액의 산정과 관련된 재무적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과세소득과 세액의 산정과 보고를 목적으로 한다. 과세소득은 과세를 계산하는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 개념은 소득 원천설과 순자산 증가설로 나누어 진다[3]. 소득원천설은 주기적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소득으로 보고 일시적, 우발적인 수입은 제외시키는 것이다. 순자산 증가설은 일정기간의 순자산의 증가를 소득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순자산 증가설에서는 소득이 주기적, 규칙적인 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순자산이 증가하면 과세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할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³⁾ 따라서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은 “익금 - 손금”이 된다. 익금은 자본거래나 법인세법의 규정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제외한 모든 순자산의 증가를 의미하고 손금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별도로 제외시킨 것외에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모든항목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에 의한 과세소득은 순자산 증가설을 따르고 있다. 법인세법에서 법인소득의 개념으로 순자산 증가설을 따르므로 기업회계상의 자본잉여금과 전기손익수정의 등이 익금의 산정에 포함되며 자본거래에 의한 순자산 감소가 손금에 포함된다.

3) 법인세법 9조 1항.

결국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과세소득에는 포함되나 손익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 항목과 그 역의 항목들에 의하여 나타난다[16]. 이러한 차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이가 소멸되는 것과 영구히 소멸되지 않는 것으로 나누어 진다. 전자의 차이를 시점차이(timing differences)라하고 후자의 차이를 영구적 차이(permanent differences)라고 한다[10]. 시점 차이는 수익이나 비용의 인식시점과 익금이나 손금의 인식시점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법인세의 기간배분에 차이가 있게 된다. 반면, 영구적 차이는 세법에 의하여 익금과 손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수익이나 비용에 포함되는 항목과 차이가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차이의 원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정책 입법에 의한 차이이다. 이차이는 조세를 통하여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특정 사항에 대하여 세법상 혜택이나 불리한 부담을 주는 것이다. 혜택은 회계상 비용이 아님에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불리한 부담은 회계상 비용임에도 손금에 산입시키지 않는 것을 말한다. 둘째, 세법상 특정항목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불허하거나 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벌금 등의 손금 불산입과 기부금 및 접대비의 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셋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차이를 내는 것으로 기업회계에서는 수익 비용을 실현주의와 발생주의에 의하여 인식하나 세법에서는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채택함에서 나타나는 차이이다. 넷째, 과세소득의 개념에 의한 차이이다. 세법은 순자산 증가설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기업회계에서는 실현주의와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섯째, 기업회계는 기업실체의 개념에 의하여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법인세법에서는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기업실체를 부인하기도 한다.

이처럼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근본적인 차이라기 보다는 손익의 귀속시기와 귀속내용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특히, 세무운영은 기업회계를 존중하고 의존하는 관계에 있음을 볼 때⁴⁾ 둘 사이의 차이는 근본적인 것이 아니다.

2.2 법인세 감면유형

조세를 통하여 재정정책목적의 달성하려는 의도를 갖는 국가는 재정정책 목적에 도움이 되는 법인에게 조세상의 혜택을 준다. 조세당국이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은 조세를 직접 감면해주는 직접적 감면방법과 익금과 손금의 인정에서 혜택을 주는 간접적 감면

4) 국세기본법 20조.

방법이 있다[6]. 조세를 직접감면해주는 직접적 방법은 조세당국이 법인세를 영구히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세무회계와 재무회계상의 영구적 차이가 된다. 반면, 익금과 손금의 인정에서 혜택을 주는 간접적 방법은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정기간 조세를 연기해주는 방법으로 시점 차이가 된다.

1) 직접적 감면방법

직접감면방법은 법인세를 영구히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공제와 산출세액에서 세액을 감면해주는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있다. 직접 조세감면은 공평과세의 원칙에는 위배되지만 재정정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형성된 것으로 감면세액만큼은 국가가 정한 취지에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정정책목적상의 조세감면액은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하여 특정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⁵⁾ 조세감면에 의한 잉여금 적립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그리고 세액감면 등에서 나타난다. 잉여금으로 적립하는 기업합리화 적립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익금을 처리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그리고 당년도 이익이 적립금액에 미달되거나 세무조정시 적립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적립할 수 있다.

그런데 직접감면의 특이한 것은 이러한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세법상 최고 한도액만을 설정하고 있어 최고한도 내에서 임의로 적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즉, 기업의 목적에 따라 적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법인은 세금을 조정할 수 있고 그결과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경우 기업은 최대세액을 감면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보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의 세액결정에서 기업의 부의 극대화만을 고려하지 않고 조세당국의 세수목적에 만도록 세금을 조정하여 세무조사를 회피하려한다[5]. 따라서 법인은 상황에 따라 세금액을 조정하려하며 그 조정은 기업부의 극대화와 세무조사의 회피라는 두가지를 고려하여 이루어 진다.

2) 간접적 감면방법

간접적 감면방법은 일정기간 납세를 유예시켜주는 방법이다. 즉, 특정 요건에 맞을경우 일정한도의 금액을 손비로 처리하여 당사업연도에 세금의 절감을 가져오나 후에 비용의 과소인식이나 준비금의 환입을 통하여 다시 익금의 구성요인이 되기도하는 세금 절감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이 방법은 조세당국이 과세를 유예시켜주어서 절세액만큼 국가가

5) 조세감면규제법 제 123조(1993년 개정).

법인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해주는 것과 같은 현상을 나타낸다. 이러한 간접 감면방법은 준비금적립과 특별상각을 들 수 있다.

준비금은 특정사업에 대하여 조세지원목적으로 세법이 그 설정을 인정하고 그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준비금은 일정기간동안 비용이나 자산의 감소에 충당되기도 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환입을 통하여 다시 익금을 구성하기도 한다. 그런데 준비금은 그 성격상 이익의 처분이지 비용이 아니다. 따라서 준비금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의 항목이 된다. 이러한 준비금은 장부상에 반영될 때에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그 세부항목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에 나타나게 된다.

특별상각은 특정요건이 맞는 기업에 대하여 일반감가상각비나 특정 자산 원가의 일정 비율 범위내에서 감가상각을 추가로 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상각은 장부에 기록되어 손익계산에도 영향을 미치며 또한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된다. 특별상각은 초기에 감가상각을 많이 계상하여 세금을 절감하고 그 이후기간에 감가상각을 적게하여 세금을 많이 내는 방법으로, 세금유예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 이렇게 특별상각을 인정하는 것은 설비의 근대화, 신기술의 사업화, 수출증진 등을 통한 재정정책성 목적의 달성에 초점을 둔 것이다. 결국 특정 산업은 설비투자를 통하여 투자자본을 조기에 회수할 뿐 아니라 과세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1].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조세의 직·간접감면은 재정정책을 위하여 법인에게 과세상의 혜택을 주는 방법이다. 그런데 직접감면은 영구적 차이를 이루는 것으로 가능한 최대액을 혜택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그 금액은 차후에 다시 익금으로 되지 않으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도에 전액을 혜택받는 것이 기업부의 극대화에 유리하다. 반면, 간접감면은 필요한 경우 준비금을 설정하거나 특별상각을 할 수 있게하여 세금혜택의 기간이 단일 사업연도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리고 간접감면방법에 의한 혜택은 차후에 익금의 증가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며, 재무제표상에 기록한 것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세부내역을 일반 재무정보 이용자가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간접감면방법은 기업이 재무상태등을 고려하여 과세상의 혜택을 받되 투자자들을 의식하여 혜택의 시기와 기간 등을 임의로 조절한다.

2.3 간접적 법인세 감면 방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간접적 법인세 감면방법인 준비금과 특별상각은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친다. 준비금의 설정과 이입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며 특별상각은 손익계산서상의 특

별손실 항목으로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킨다. 그런데 이 두 항목의 사용에 따른 재무제표에의 영향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다. 손익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익잉여금 처분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보다 클 것이므로 경영자들은 이익이 적게 나타나는 특별상각을 이용한 세금절감보다는 준비금에 의한 세금절감을 추구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준비금은 일정기간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익금으로 산입되어 세금의 증가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고 또한 이익이 크므로 주주들의 배당증가요구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그결과 세금유예목적에 가진 준비금의 설정에는 보다 신중을 기하게 되며 단기간의 혜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준비금 설정을 이용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경영자들은 세금감면을 이용하되 각 법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1) 세금목적상의 회계변경효과(특별상각효과)

회계변경은 기업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투자자들의 행동이 기업가치의 변경없이 회계변경에 의한 이익변화에 영향을 받는다면, 회계변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가치에 영향이 없이 기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투자자들의 행동에 초점을 둔 연구와 회계변경이 세수에 영향을 주어 기업가치가 변화할 경우 투자자들의 반응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회계변경이 기업가치에 영향이 없이 단지 이익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투자자들의 행동을 연구한 것들은 투자자들이 이익에 기능적으로 고착(functional fixation)되는지에 대한 것이 주류를 이룬다. 이러한 연구는 회계변경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무영향 가설과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계적 가설로 나누어져 연구되었다[26, ch.4]. 여러 연구결과 기업가치의 변화가 없는 이익의 변화에 대하여 투자자들은 기능적으로 고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냈다.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변경에 대한 연구는 재고자산 평가의 차이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것이 주류를 이룬다. 세무목적에 위하여는 인플레이션기에 후입선출법을 사용하고 재무 보고목적에 위하여는 선입선출법을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자들의 반응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인플레이션시 후입선출법의 채택은 세금을 적게 내게되어 기업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가정을 하였다. 그러나 실제연구결과는 후입선출법의 선택이 인플레이션이 존재하는 기간이 아니라 그이후에 나타나고 후입선출법

선택에 대한 주가반응도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⁶⁾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경영자와 주주들의 정보비대칭때문으로 설명한 휴그와 슈바르츠는 경영자들은 기업성과가 나빠지는 경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세금절감을 위한 후입선출을 택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여 의사결정함으로써 후입선출법에 의한 세금의 절감이 있을 지라도 투자자들은 이것을 좋은 뉴스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1].

경영자들은 또한 이익의 보고에 있어서 연도별로 심한 차이를 보이려 하지 않는다. 경영자들은 이익의 계산에 관여하여 이익을 유연화(income smoothing)시키려 한다. 경영자들은 자신들의 기대효용을 극대화 시키기 위하여 이익을 유연화시키려 한다[24]. 즉, 경영자들은 자신들의 보상을 극대화하거나 주가를 높이기 위하여 이익을 유연화 하려 한다고 한다. 이익의 유연화는 수익이나 비용의 인식시점을 변화시키는 방법, 인식을 기간별로 배분시키는 방법, 회계항목의 분류를 변경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방법중의 하나로 회계변경을 이용하기도 한다.

경영자들은 또한 법인세의 변동을 원하지 않는다. 법인세는 국가의 중요한 세원이 된다. 따라서 국가는 안정된 세원을 확보하고 국가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예측된 만큼의 조세를 징수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무당국은 자신들의 모형에 의하여 세수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조세를 징수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무행정이 이러한 세무당국의 목적우선적인 측면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2]. 그러므로 법인은 세무 조사를 회피하고 조세당국과의 관계유지를 위하여 세금을 세무당국의 추계모형에 맞게 보고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들은 세금을 유연화시키려한다[6].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경영자들은 회계변경을 선택하되 그것이 가져오는 효과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회계변경을 선택한다. 회계변경의 일종이며 우리나라에서 특이하게 인정되는 특별상각은 이익을 감소시키는 대신 조세의 감소를 가져온다. 따라서 경영자들은 이익이 높게 나타났을 때 이익을 유연화 시키거나 세금을 유예시키기 위하여 특별상각을 선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이익의 감소효과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연도, 즉 이익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도에 특별상각을 선택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매출액이 증가할 경우 특별상각을 하고 이자보상비율이 낮은 기업이 특별상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4].

6) Biddle and Lindahl[13]의 연구에서는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Brown[14]의 연구에서는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준비금설정의 효과

법인세의 혜택을 누리는 준비금은 해외시장개척, 증권거래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기술개발 지원, 그리고 특정산업의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해당 법인에게 설정가능토록한 것이다. 이러한 준비금은 일정기간내에 사용하여야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내에 환입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준비금은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준비금은 세금의 절감을 가져오는 효과이외에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방법은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세금의 절감을 가져오는 것이다. 준비금을 설정하고 준비금의 설정목적에 자금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준비금을 환입하여 익금처리하게 된다. 익금의 처리는 손금산입후 2년에서 5년후부터 일시 또는 3년내지 4년이내에 환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따라서 준비금에 의한 세금의 혜택은 최대 8년⁷⁾이 된다. 따라서 특별상각의 경우 상대적으로 긴 상각기간 동안 혜택을 받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결국, 준비금에 의한 조세절감은 특별상각에 비하여 단기간에 걸친다. 그리고 준비금은 이익에 영향이 없는 반면, 특별상각은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준비금에 의한 세금절감은 세금을 적게 내려는 의도가 있는 기업이 단기간의 혜택을 보기 위하여 선택한다고 할 수 있다.

III. 가설의 설정 및 분석방법

3.1 가설의 설정

조세는 부의 이전을 가져온다. 법인세는 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로서 법인의 부를 국가로 이전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런데 법인세의 납부는 주로 현금에 의하게 된다. 따라서 법인의 세금납부는 현금의 감소를 가져오며 그결과 법인의 지불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조세를 지급하기 위하여는 어느정도의 지급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급능력이 낮은 법인은 세금의 절감을 통하여 현금의 유출을 적게 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간접적인 방법에 의한 조세감면을 활용하는 기업은

7) 본 연구의 대상이된 기간은 1993년 4월 1일 이전으로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이 있기 이전이다. 이때에는 해외사업손실 준비금의 사용은 계상 5년경과후 3년내 균등환입으로 하였다.

지급능력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I] 간접적 조세감면을 사용하는 기업은 단기지불능력이 낮다.

간접적 조세감면방법을 사용하여 조세감면을 받으려는 기업은 조세감면 관련항목을 재무제표에 계상하여야한다. 기업들이 조세감면을 받으려는 목적은 세금의 절감을 통하여 기업의 부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 그런데 세금의 절감은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과세표준을 자진신고하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으나 세무당국은 징수의 안정을 위하여 세수예측모형에 맞는 징수를 원하게 된다. 따라서 신고 과세표준액이 세수예측 모형에서의 추계와 같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여 기업들은 세금을 유연화시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서 세금을 절약하는 정책을 사용하게 된다. 기업이 절세를 하면서 세무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위하여는 기업의 성과가 좋아야 한다. 기업의 성과가 좋을 경우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세금을 절감하여도 신고과세액이 징수목표액에 미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기업들은 세금을 절감하면서 또한 세무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간접적인 방법에 의한 세금의 절감은 수익율이 높은 연도에 이루어 진다고 할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II] 간접적 조세감면을 활용하는 기업의 수익율은 높다.

간접적 조세감면을 사용하는 기업들은 특별상각과 준비금중에서 자신들의 재무상태를 고려하여 하나의 방법에 더 의존할 것이다. 보고이익이 큰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특별상각에 더크게 의존하여 보고이익을 유연화 시키면서 조세감면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보고이익이 작은 기업은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상각보다는 준비금을 통하여 조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동기를 가진다. 따라서 특별상각을 더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은 준비금을 더 많이 사용하는 기업에 비하여 수익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III] 특별상각에 의존하는 기업은 준비금에 의존하는 기업보다 수익율이 더 높다.

기업의 지급능력이 유지되는 기업은 당기의 조세절감을 위하여 단기적인 혜택이 있는 방법을 사용하고 장기적인 혜택이 있는 방법은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위하여 예비해둘 가능성이 높다. 즉, 지급능력이 유지되고 있는 기업이 당기의 과세소득 증가 등의 이유로 세금절감을 받으려 할 경우 준비금에 의한 세금절감혜택에 의존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기업은 미래의 장기적인 불확실성의 상황에서 기업의 지급능력이 나빠질 경우 장기적 혜택이 있는 특별상각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급능력이 유지되는 현재에는 단기적 혜택이 있는 준비금방법을 이용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IV] 준비금에 의존하는 기업은 특별상각에 의존하는 기업보다 지급능력이 더 높다.

3. 2 변수의 정의

본연구에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가설에서 나타나는 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첫째, 간접조세 감면은 조세감면을 위하여 특별상각과 준비금을 이용한 정도를 의미한다. 본연구에서는 간접조세 감면을 세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간접조세 감면방법에 의한 총손비증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text{특별상각액} + \text{준비금전입액} - \text{준비금환입액}) / \text{매출액}$ 으로 계산한다. 다른하나는 특별상각정도로 $\text{특별상각액} / \text{매출액}$ 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마지막은 준비금 액수로 $(\text{준비금전입액} - \text{준비금환입액}) / \text{매출액}$ 으로 계산한다.

둘째, 수익율은 당기의 기업이익율로 특별항목의 영향을 제외한 이익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본연구에서의 수익율은 $\text{경상이익} / \text{매출액}$ 으로 계산한다.

셋째, 지급능력은 기업의 단기 지급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동비율을 이용한다. 유동비율은 $\text{유동자산} / \text{유동부채}$ 로 계산한다.

넷째, 특별상각에 의존하는 기업과 준비금에 의존하는 기업은 특별상각과 준비금중 어느 방법에 더 많이 의존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text{특별상각} / \text{매출액}$ 이 $(\text{준비금전입액} - \text{준비금환입액}) / \text{매출액}$ 보다 큰기업을 특별상각에 의존하는 기업으로 하였다. 그리고 그 외의 기업을 준비금에 의존하는 기업으로 한다.

3. 3 실증분석의 절차

1) 분석대상기업의 선정

본연구에서 분석대상기업은 1987년에 1990년 기간동안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중 재무제표를 공개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표본기업의 선정은 제조업에 한정하였다. 이렇게 한이유는 제조업이 재정목적에 위한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중 한 연도에 간접적 조세감면의 방법인 특별상각과 준비금전입을 모두 사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렇게한 이유는 두방법을 모두 사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어느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가를 구분 짓는데 유용하며 하나의 방법을 고집하거나 간접적 조세감면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을 제외시키기 위함이다. 그리고 기업간의 재무제표의 비교를 높이기 위하여 12월 결산 법인만을 대상으로하였다.

2) 분석대상자료의 요약

본연구에서 분석대상 기업은 총 104개 기업으로 연도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87년과 88년보다 89년과 90년에 간접 조세감면을 이용한 기업이 적다. 이것은 경제가 호황이던 87년과 88년에 상대적으로 이익이 많아 간접 조세감면을 많이 사용한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1>

분석 대상기업의 연도별 분포

연 도	기 업 수	(%)
1987	34 개	32.7%
1988	36 개	34.6%
1989	21 개	20.2%
1990	13 개	12.5%
계	104 개	100%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각변수의 통계적 요약값은 다음의 <표 2>에 나타나 있다. 간접 조세혜택을 위한 매출액 대비 순손비 인식액은 평균 약 2.1%이며 최대값은 11%에 달한다. 매출액 대비 특별상각비율은 평균 약 1%이고 최대 7.1%이다. 순준비금 적립액은 평균 1.1%이고 최소 -1%, 최대 4.4%이다. 유동비율은 평균 130%이고 매출액 경상이익율은 7.9%이다.

〈표 2〉 각변수의 통계적 요약값(매출액 대비)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대	최소
순손비인식액*	0.021	0.017	0.11	0.00
특별상각	0.010	0.012	0.07	0.00
순준비금**	0.011	0.010	0.04	-0.01
유동비율	1.301	0.466	3.35	0.68
경상이익율	0.079	0.040	0.20	0.00

* (특별상각 + 준비금전입액 - 준비금환입액) / 매출액

** (준비금전입액 - 준비금환입액) / 매출액

3) 분석절차

본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앞서 각 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그리고 [가설 I]과 [가설 II]는 회귀분석을 통하여 검증한다. [가설 III]과 [가설 IV]의 검증은 t-test와 비모수 통계기법인 Mann-Whitney 검증을 이용한다.

IV. 실증분석 결과

4.1 각변수사이의 관계

본연구에서 사용하는 변수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변수간 상관관계분석의 결과는 〈표 3〉에 나타나 있다. 〈표 3〉에서 볼 때 순손비의 인식은 특별상각이나 순적립금 증가와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경상이익과 양의 관계를 보이며 유의적인 반면 유동비율과는 음의 유의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이것은 간접적 방법에 의한 세금절감이 순이익이 높은 연도에 세금부담을 줄이고 지급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별상각은 이익과는 양의 관계를 보이고 유동비율과는 음의 관계를 보인다. 그리고 순준비금도 이익과는 양의 관계에 있고 유동비율과는 음의 관계(통계적으로 비유의적)에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간접적 조세절감이 기업성과가 좋은해에 세금을 줄이고 단기지급

능력이 나쁜 상황에서 조세를 통한 유동성의 감소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이익과 유동비율 사이에는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성과가 좋은 기업이 자금에 여유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기업의 성과는 자금의 여유를 가져오며 유동비율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3〉 각변수사이의 관계

	순손비인식액	특별상각	순준비금	유동비율
특별상각	0.8395***			
순준비금	0.7262***	0.2361***		
유동비율	-0.1698**	-0.1416*	-0.1245	
경상이익율	0.3317***	0.2533***	0.2728***	0.2295**

*** : $P < 0.001$, ** : $P < 0.05$, * : $P < 0.1$

4. 2 간접적 법인세감면과 단기 지급능력

본 연구에서 [가설 I]은 단기 간접적 조세 감면방법을 사용하는 기업의 단기 지급능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간접적 조세 감면을 위한 손비 계상액과 단기 지급능력, 그리고 각 방법(특별상각과 준비금)을 사용하는 정도와 단기 지급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손비액을 독립변수로 하고 유동비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4〉에 나타나 있다.

〈표 4〉 간접적 법인세 감면과 단기지급능력

A. 단순회귀분석(종속변수 : 유동비율)

독립변수	계 수	t-value	유의수준	회귀식의 F값	F의 유의수준
순손비계상액	-4.57216	-1.740	0.0849	3.02714	0.0849
특별상각	-5.39000	-1.445	0.1516	2.08715	0.1516
순준비금	-5.99584	-1.267	0.2080	1.60525	0.2080

B. 다중회귀분석(종속변수 : 유동비율)

독립변수	계 수	t-value	유의수준	회귀식의 F값	F의 유의수준
특별상각	-4.64411	-0.955	0.3417		
순준비금	-4.52343	-1.178	0.2417	1.49908	0.2283

〈표 4〉에서 보는 것처럼 기업에서 간접감면을 통하여 세금을 절감하고자 하는 기업은 대체적으로 유동비율이 낮다. 이러한 현상은 순손비 계상액과 유동비율과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간접적 감면 방법 각각과 유동비율과의 관계는 음의 관계를 나타내나 유의적인 관계는 아니다(〈표 4〉의 A). 다만, 순손비계상액 전체와 유동비율과의 관계는 음의 관계를 나타내며 $\alpha = 0.1$ 수준에서 유의적이다. 그리고 두방법을 동시에 고려한 경우에도 방향은 음의 관계를 나타내나 유의적인 관계는 아니다(〈표 4〉의 B).

결국 기업들은 단기 지급능력이 낮을 때 지급능력의 감소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감점감면 방법에 의한 세금절감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방법과 유동비율과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순손비 계상액 전체와 유동비율과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약한 유의적인 관계를 보여 준다. 이것은 기업들이 지급능력이 낮을 경우 간접조세 감면 방법을 사용하되 두가지 방법을 적절히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간접조세를 사용하는 법인이 지불능력이 낮다는 [가설 I]은 제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4. 3 간접적 법인세감면과 수익율

기업은 조세를 다기간에 걸쳐 유연화 시키려는 동기를 갖는다. 이러한 동기는 조세행정에 부응하여 세무보고를 하려는 경향이 큰 우리나라의 경우 두드러질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은 많은 이익을 실현한 연도의 이익을 다음연도 이후로 이연시켜 이익의 유연화를 추구할 뿐 아니라 단기의 조세부담에 따른 지급능력의 감소를 가져오려한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들은 이익이 많이 실현된 연도에 조세감면 규정들을 이용하여 조세를 이연시키려 할 것이다. [가설 II]는 이러한 경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다. 즉, 당기의 경상이익이 많이 실현된 기업이 조세감면 규정들을 사용하여 차기이후로 이익을 이연시키고 있는 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검증결과는 <표 5>에 나타나 있다.

<표 5> 간접적 법인세 감면과 수익율

A. 단순회귀분석(종속변수 : 수익율)

독립변수	계 수	t-value	유의수준	회귀식의 F값	F의 유의수준
순손비계상액	0.76611	3.3552	0.0006	12.61393	0.0006
특별상각	0.82672	2.644	0.0095	6.99258	0.0095
순준비금	1.12688	2.864	0.0051	8.20268	0.0051

B. 다중회귀분석(종속변수 : 유동비율)

독립변수	계 수	t-value	유의수준	회귀식의 F값	F의 유의수준
특별상각	0.93179	2.338	0.0214		
순준비금	0.65258	2.073	0.0407	6.38284	0.0025

<표 5>의 A에서 보는 것처럼 순손비계상이 많은 기업은 경상이익율이 높다. 이것은 이익을 많이 보고한 기업이 조세절감을 위하여 법인세 감면규정을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의 이익과 법인세 감면의 각방법 각각과의 관계도 <표 5>의 A에 나타나 있다. 특별상각과 순적립금 모두 수익율과 양의 관계를 나타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인다. 그리고 각방법을 모두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도 각각의 변수가 수익율과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단기 지급능력과 간접적 절감방법의 검증보다 확연한 결과를 보여준다. 기업들은 단기지급능력의 감소보다는 수익율의 증가에 따른 조세증가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함을 보여준다. 조세회피를 위한 방법중 어느 방법이 더 수익율과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행한결과 수익율과는 순준비금 적립액이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기업들은 이익이 증가하여 조세부담이 높아질 경우 조세부담을 차후로 연기시키기 위하여 조세감면 규정을 이용하고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세감면의 방법은 특별상각과 준비금적립을 모두 사용하고 있으나 준비금이 이익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들이 이익이 많이 나타날 경우 조세를 회피하되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이익을 감소시키지 않는 방법인 준비금을 통한 조세회피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경우 조세회피의 효과가 단기간일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이익이 많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급능력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⁸⁾ 보고이익을 증가시키고 세금을 절감하는 준비금 방법을 선호하는 것 같다.

4.4 각 방법 의존에 따른 수익율 및 지급능력

기업은 자신들의 재무상태와 보고이익을 고려하여 조세감면의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이익율이 높은 기업은 조세의 회피뿐 아니라 이익의 유연화를 이루기 위하여 준비금의 적립보다는 특별상각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설 III]이 설정되었다. [가설 III]의 검증은 특별상각을 더 많이 사용한 기업과 준비금을 더 많이 사용한 기업사이 수익율에 차이가 있는가를 t-test와 Mann-Whitney 검증을 이용하여 검증한다. 그리고 각 방법의 사용에 대한 결정은 당기에 이루어 지므로 과거의 결정에 의하여 나타나는 준비금의 환입은 고려하지 않는다. 즉, 각 기업별로 당기의 특별상각과 당기의 준비금 적립액을 비교하여 조세감면을 위하여 어느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가를 구분한다. 이렇게 하여 검증한 결과는 <표 6>에 나타나 있다.

8) 수익과 지급능력사이 관계는 양의 유의적인 관계를 나타낸다(<표 3>).

〈표 6〉 간접적 절감방법의 의존과 수익율

의존방법	t 검정			Mann-Whitney 검정	
	기업수	평균	t-value	평균순위	z-value
특별상각	26	0.0834		57.58	
준비금	78	0.0771	0.69	50.81	-0.9909

〈표 6〉에서 보는 것처럼 준비금을 이용하여 조세절감을 하는 기업이 더 많다. 준비금을 이용하는 기업이 많은 이유는 기업이 이익을 크게 보이면서 조세를 적립하려는 의도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각방법에 의존하는 기업들의 수익율을 비교한결과 특별상각을 이용하는 기업이 경상이익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alpha = 0.05$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비모수 검증에서도 나타난다. 특별상각을 이용하는 기업의 경상이익율의 평균순위가 더 높게 나타나 경상이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것은 아니다.

의존하는 간접 조세감면 방법과 경상이익과의 관계를 볼때 특별상각을 더 많이 이용하는 기업은 준비금을 더 많이 이용하는 기업보다 수익율이 높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들은 간접적 방법에 의한 조세감면을 받을 경우 이익에 영향이 적은 준비금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경상이익이 상당히 높아 이익을 줄여 이익을 유연화 시키려는 기업의 경우 특별이익을 더 많이 이용한다고 할 수 있다.

준비금에 의한 조세감면을 받는 기업은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조세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방법은 조세의 유예기간이 짧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준비금을 이용하는 기업은 단기간 동안의 조세혜택이나 조세의 유연화를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단기간의 조세혜택을 받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단기 지급능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단기 지급능력이 떨어지는 기업은 좀더 장기적인 혜택을 추구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설 IV]가 설정되었다. [가설 IV]의 검정도 t-test와 Mann-Whitney 검정을 한다. 검정결과는 〈표 7〉에 나타나 있다.

〈표 7〉 간접적 감면방법의 의존과 유동비율

의존방법	t 검정			Mann-Whitney 검정	
	기업수	평균	t-value	평균순위	z-value
특별상각	26	1.2807		46.96	
준비금	78	1.3083	-0.26	54.35	-1.0810

〈표 7〉은 특별상각에 의존하는 기업보다 준비금에 의존하는 기업의 유동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Mann-Whitney 검정의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간접적 감면방법과 유동비율의 관계를 살펴볼 때 단기 지급능력이 큰 기업은 특별상각보다는 준비금을 사용하여 조세 절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단기 지급능력이 보장되는 기업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상각보다는 이익을 크게 하면서도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반면, 단기 지급능력이 작은 기업은 장기간의 세금혜택을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 처럼 기업은 세금유예의 혜택을 받을 때 에도 자신들의 재무상태와 수익을 등을 고려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법에 의존한다. 따라서 각 세금혜택 방법의 선택이 수익 및 단기 지급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가설 III]과 [가설 IV]는 입증되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아니다.

V. 요약 및 연구의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세 감면의 방법중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 혜택방법을 이용하는 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연구하는 것이다. 법인세 혜택의 방법중 간접적 방법은 특정의 요건에 알맞는 기업이 특정항목을 재무제표에 계상할 경우 그 항목의 손금처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특별상각과 제준비금이 있다. 기업은 이러한 조세상의 혜택을 이용하여 조세를 절감하고 국가는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재정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려한다. 그런데 기업은 이러한 규정을 이용함에 있어서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재무보고와 세

무보고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방법을 이용할 것이다. 본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의 수익율, 단기지급능력과 간접적 조세감면 방법선택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접적 조세감면과 단기지급능력은 음의 관계를 나타내며 간접감면의 총액과 단기지급능력사이에는 $\alpha = 0.1$ 수준에서 유의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각각의 방법과 단기지급능력사이에는 음의 관계가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것은 아니다. 둘째, 간접적 조세감면과 당기의 수익율 사이에는 양의 유의적인 관계가 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조세감면 방법 각각에서도 나타난다. 이것은 조세감면의 주 요인이 이익의 증가에 따른 세금회피가 그목적임을 보여주며 그방법은 순이익에의 영향에 관계없이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특별상각을 더 많이 사용하는 기업은 준비금을 사용하는 기업보다 경상이익율이 더 높다. 이것은 이익이 높은 기업이 이익의 유연화와 조세의 절감을 위하여 특별손실을 통한 조세절감을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장기간의 혜택이 있는 특별상각보다 단기간의 효과가 있는 준비금을 사용하는 기업은 단기 지급능력이 크다. 단기지급능력이 큰 기업은 이익을 크게 보고하면서도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준비금에 의한 조세절감방법을 선호하게 된다.

결국 기업은 자신들의 재무상태와 이익율을 고려하여 법인세 절감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간접적 방법에 의한 법인세 절감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은 지급능력과 수익이 있으나 지급능력보다는 수익이 간접적 절감방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참고문헌

1. 이동희, 『법인세 절세전략』, (한국세무경영사, 1988).
2. 이우택, “한국의 조세행정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1990.
3. 이철제, 『세법강의』 (서울 : 세경사, 1991).
4. 이형권, “회계변경과 기업특성요인의 주가효과와 기업특성요인의 회계선택효과,”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5. 조세문제 연구소, 『국민 조세의식의 조사연구』 세무대학, 1983.
6. 주현기, “조세감면 규정을 이용한 법인세 유연화 현상,”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1년.
7. 차병권, 『조세개론』 제2전정판, (서울 : 박영사, 1988).

8. AICPA, *Objectives of Financial Statements*, (AICPA, 1973).
9. AICPA, *Statement NO. 4 of the Accounting Principle Boards*, "Basic Concepts and Accounting Principles Underling Financial Statement of Business Enterprises," New York : AICPA, 1970.
10. APB, "Accounting for Income Taxes," *APB Opinion NO. 11*, 1967.
11. *Accountants' Handbook*, 5th edition, New York, The Ronald Press, 1970.
12. Alexander, Sidney S., "Income Measurement in A Dynamic Economy," in *Studies in Accounting Theory*, ed. by W. T. Baxter and Sidney Davidson, (Richard D. Irwin Inc., 1962), pp. 126-217.
13. Biddle, G., and F. Lindahl, "Stock Price Reaction to LIFO Adoptions : The Association Between Excess Return and LIFO Tax Saving,"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Autumn 1982, pp. 551-588.
14. Brown, R., "Short-Range Market Reaction to Changes to LIFO Accounting Using Preliminary Earning Announcement Date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Spring 1980, pp. 38-63.
15. Committee of the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Statement on Accounting Theory and Theory Acceptance*, Sarasota : AAA, 1977.
16. Committee on Accounting Procedure, *Accounting Research Bulletin NO. 43*, (AICPA, 1953).
17. Copeland, T. E., and J. F. Weston, *Financial Theory and Corporate Policy*, 2nd ed. (Addision-Wesely Publishing Company, 1983).
18. FASB, "Objectives of Financial Reporting by Business Enterprises," *Statements of Financial Accounting Concepts NO. 1*, (Stamford : FASB, 1978).
19. FASB, "Elements of Financial Statements of Business Enterprises," *Statements of Financial Accounting Concepts NO. 3*, (Stamford : FASB, 1980).
20. Hicks, J. R., *Value and Capital*, (Oxford : Clarendon Press, 1946).
21. Hughes, Patricia J. and Edurado S. Schwartz, "The LIFO/FIFO Choice : An Asymmetric Information Approach,"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1981, pp. 41-58.
22. Kieso, Donald E., and Jerry J. Weygandt, *Intermediate Accounting*, (John Wiley & Sons Inc., 1980).
23. Paton, W. A., and A. C. Littieton, *An Introduction to Accounting Standards*, AAA Monograph

- NO. 3, (AAA, 1940).
24. Ronen, Joshua and Simcha Sadan, *Smoothing Income Numbers*, (Addison-Wesely Publishing Company, 1981).
25. Solomons, David, "Economic and Accounting Concepts of Income," *The Accounting Review*, July 1961, pp. 374-383.
26. Watts, Ross L. and Jerold L. Zimmerman, *Positive Accounting Theory*, (Prentice-Hall, 1986).